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확정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사건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제때에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18폐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해당한 손해보상책임을 지워 피해자가 피해를 입기 전의 재산상태를 원만히 회복할수 있게 하여 야 한다. 그러자면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로 나선다. 그것은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이 곧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보상량으로 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은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기 전의 재산상 대와 침해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을 놓고 확정할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손해량확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될수 없다. 만일 이러한 방법을 유일한 기 준으로 하여 손해량을 확정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완전히 보상시켜주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손 해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은 무엇보다먼저 그 계산기준을 바로 정하고 확정하여야 하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하자면 그것을 계산하는 옳바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손해량의 계산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같은 손해보상청구사건들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량이 서로 다르게 확정될수 있기때문이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 가격 등이 포함된다. 재산적손해를 계산하는데서 시간과 장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량을 비교적 적당하면서도 공정하게 확정할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법이 특별히 정한 손해량의 확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손해량을 계산하여야한다. 그러나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의 확정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우의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량을 확정할수 있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우선 시간이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손해를 계산하는 시점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을 의미한다. 례하면 위법행위가 완료된 시간이나 손해의 실제적인 발생시간, 피해자가 손해를 발견한 시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간 등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침해로 하여 손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 시간을 손해량을 계산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위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해가 더욱 확대된다면 손해(사후적인 손해)의 확대가 정지된 시점을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이다.

손해량계산에서 시간은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서 사후적인 손해의 경우에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즉시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수행과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기때문에 위법행위가 완료된 시간이자 곧 손해량의 확정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시간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해의 량이 달라진다. 실례로 무더운 여름철에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일창고에 침입하여 도마도 두 상자를 도적질하고 나오다가 쌓아놓은 도마도상자를 넘어뜨린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도마도는 계속 부패, 변질되게 된다.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가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가해자가 상자를 넘어뜨릴 당시 못쓰게 된 도마도의 량과 발견될 당시 부패, 변질된 도마도의량이 달라진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이 경우에 손해계산시점을 위법행위가 완료된 시간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피해자가 손해를 발견한 시간으로 하겠는가에 따라 가해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량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계산하는가 하는것은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적리익을 원만히 회복시켜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허물이 있는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민법상 허물책임원칙의 필연적요 구이기도 하다.

손해의 확대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허물로 인하여 이루어진것만큼 손해발생시점의 손해량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확대된 손해량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가해자가 처음 발생시킨 손해량만 보상하도록 한다면 확대된 손해량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결과발생에 아무러한 허물도 없는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하여 알면서도 방임하였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허물도 없는 경우에 그에게 확대된 손해부분을 감수하도록 하는것은 민법상의 허물책임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자기의 허물로 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량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손해량확정의 시점을 손해의 확대가 정지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사후적인 손해의 경우 손해계산의 기준으로는 손해의 확대가 정지된 시점으로 선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우의 실례에서 손해계산시점을 피해자가 도마도가 부패, 변질된것을 발견하였다면 발견한 시간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도마도의 부패, 변질된것을 때로 보아야 한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또한 장소가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손해를 계산하는 곳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을 의미한다.

일부 손해보상청구사건들에서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이 여러 장소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때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발생한 손해량이 달리 확정되게 된다. 례를 들어 가해자가 ㄱ지역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ㄴ지역에서 판매한 경우를 들수 있다. 가령 그 물건의 가격이 ㄴ지역에서는 100원이고 ㄱ지역에서는 50원이라고 할 때 손해계산의 장소를 어느곳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가해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은 돈 100원 전부를 보상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손해입은 50원만 보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게 된다. 즉 장소를 어느곳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보상량이 달리 확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확정에서 장소문제는 해당 사건과 이러저러하

게 련관되는 서로 다른 장소중에서 어느 장소를 손해량확정의 기준으로 정하겠는가 하는 문제로서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는데서 장소를 옳바로 선정하는것은 피해자에게 실지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할수 있는 기초를 주고 나아가서 제기된 손해보상청구를 정확 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재산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 장소로는 여러곳이 될수 있다. 해당 재산의 소재지나 침해한 재산을 처분한 곳과 함께 수송중에 있는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발송지나 도착지 등이 될수 있다. 어느 장소를 손해량확정의 기준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위법행위로 하여 동산이 손상, 멸실된 경우에는 동산이 손상, 멸실된 곳을 손해계산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것은 동산이 침해된 곳이 손해의 가치 를 적중하게 평가할수 있는 장소로 되기때문이다.

동산을 침해한 곳과 처분한 곳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동산이 침해된 장소를 손해계산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가 실지 손해본것만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당리득을 막고 사건이 등가보상의 원칙에 맞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산이 류동과정에 침해된 경우(례하면 수송도중 화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손해량계산의 기준을 해당 화물의 도착지로 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 화물이 최종적으로 도착지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내진것이므로 마땅히 그 가치는 도착지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침해한것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이동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위법행위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대체로 그 소재지에서 일어난다. 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위치하고있는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 달리 평가될수 있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수 없다. 때문에 부동산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손해량확정의 기준으로 정하는것이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하는 측면에서 보아도 가장 합리적이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또한 가격이 있다.

이것은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 손해보상액을 확정하겠는가 하는것을 의미한다.

침해된 재산의 가격을 바로 정하는것은 그 재산의 가치를 확정하고 위법행위자에게 해당한 보상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의 민사적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가격을 옳바로 설정하여야 재산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정확히 확정할수 있는 기준을 주고 나아가서 제기된 사건이 피해자의 재산상손해를 원만히 보상해주는데로 지향되게 할수 있다.

공화국손해보상법 제48조에서는 공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침해된 재산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등에 기초하여 재판기관이 정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기관은 소매 또는 수매가 격,지역시장가격 등에 의거하여 손해보상액을 확정할수 있다.

일련의 경우 재판소가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는데서 의거할수 있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대상들이 위법행위로 하여 멸실, 손상된 경우가 있을수 있다. 실례로 명승지나 천연 기념물과 같이 가격이 설정되여있지 않은 대상들이 위법행위로 하여 손상된 경우를 들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견하여 공화국손해보상법에서는 침해대상에 따르는 손해보상액을 확정할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손해보상법에서는 지하자원이나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관광자원, 수산자원, 농경지, 문화유물 등을 침해하였거나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국가감독기관이나 국가관리기관이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상들이 위법행위로 하여 멸실되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감독기관이나 국가관리기관이 정한 손해보상액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수 있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은 다음으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손해만 본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익도 얻은 경우 리익을 본것만큼 제외시켜 확정하여야 한다.

일련의 손해보상청구사건들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는것과 함께 리익도 얻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례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해자가 완전히 파손시킨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오토바이의 가치에 해당한 보상금과 함께 리익(파괴된 오토바이를 파철로 수매하여 받은 금액)도 얻은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파손된 오토바이를 파철로 수매하여 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오 토바이의 가격전액을 보상시킨다면 피해자는 손해이상의 리득을 얻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수매금액만큼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 보상금에서 공제하는것이 공 평하다고 볼수 있다.

피해자가 얻은 리익에는 재산의 증가(적극적인 리익)와 지출의 감소(소극적인 리익)와 같은 경제적리익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얻은 리익은 경제적리익 또는 현금으로 계산할수 있는 재산상의 리익만을 념두에 둔다.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손해와 함께 일정한 리익도 얻는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 보상금에서 피해자가 얻은 리익을 공제시켜야 하는것은 손해보상의 본질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당하기 전의 재산상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리익을 얻게 하기 위한것이 아니라는것과 관련된다.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얻은 리익이 손해의 크기와 같은 경우 그의 보 상청구권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공제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지워지는것을 막고 당 사자들사이에 등가성의 원칙에 기초한 재산거래관계가 이루어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 보로 된다. 뿐만아니라 손해보상청구 및 리행에서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해당한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한다.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은 다음으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허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부 손해보상청구사건들에서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함께 피해자의 허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실례로 ㄱ가 ㄴ의 창고에 들어갔다가 부주의로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일어난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ㄴ는 가능한 대책을 세워 손해가 확대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ㄴ가 창고에 있던 재산전부에 대한 보상청구를 타산하면서 아무러한 방지대책도 세우지 않아 피해가 확대

되였다면 최종적인 결과에는 기의 허물과 함께 L의 허물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가 보상해야 할 보상금에서 L의 허물로 하여 확대된 손해부 분만큼 고려하여 제외시키는것이 공평하다. 즉 피해자의 허물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 우 그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며 손해의 확대를 초래한 경 우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공화국손해보상법 제4조에서는 재산이나 인신의 침해로 발생된 손해가 커지는것을 가능한 조건에서 막는것은 피해자의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어겨 늘어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고 규제하고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허물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보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는것은 민사책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의 허물책임원칙의 구현이라고 말 할수 있다. 허물책임원칙은 위법행위에 대한 허물이 있는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지우는 원 칙으로서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무과실책임)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에게 허물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지울수 없다. 물론 가해자는 자기의 허물있는 행위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허물로 인한 손해부분까지 가해자가 보상하게 하는것은 공정한것으로 될수 없다.

허물책임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의 허물정도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거나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가해자는 자기의 허물있는 행위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라고 하여도 손해의 확대에 허물이 있으면 그의 보상청구권 은 그만큼 제한되게 된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허물이 있다는것을 증명할 부담은 가해자에게 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물로 하여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해자는 발생한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서 류의할것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해자의 보상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를 고려할수 있으며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고려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피해자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결과를 목적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해자의 보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것이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허물이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가해자의 보상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는것은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을 극력 줄일뿐아니라 손해 보상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지워지는것을 막고 민사분쟁사건이 허물책임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재판, 중재기관일군들은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확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 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법적으로 튼 튼히 담보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손해량, 재산, 손해보상